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71
----------	-------

발의연월일 : 2025. 11. 3.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김기웅
엄태영 · 강선영 · 구자근
김상훈 · 박충권 · 권영진
이성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 규제강화 등으로 식품 수출 시 인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함.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

아울러,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제3호).

법률 제 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2항제2호 중 “필요한 기술지원”을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생 략)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다.	②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u>필요한 기술지원</u> 및 지도·자 문 사업	2. ----- <u>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u>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 수출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u> <u>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u> <u>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